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508

발의연월일: 2020. 11. 19.

발 의 자: 주철현 · 민형배 · 조오섭

강득구・민병덕・서영교

신정훈 · 윤준병 · 이상직

이규민 의원(10인)

제안이유

헌법 제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라고 선언하고,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서만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체농가 중 임차 농가가 51.4%로 자경농가를 초과하여 경자유전의 헌법정신은 사라지고 예외적이어야 할 임차농이 주류를 이루는 비정상이 횡행하고 있음.

현행 농지법령에 따르면 비농업인이라도, 상속인 또는 8년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했던 이농자는 상속 또는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1만 제곱미터 이내의 농지를 아무런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농업경영이나 농지처분 의무도 없어. 임차농 증가의 주원인으로 작

용하고 있음.

농촌인구는 급격하게 고령화되고 있으나, 자손들 대부분은 도시에 거주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시간이 흐를수록 비농업 상속인 및 이 농자의 농지 소유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그들의 농업경영은 기대 하기 어렵고, 일선 행정기관이나 인근 농지경영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소유자·임차인 등 현황 파악과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특히, 농지 상속은 「민법」(제187조, 제997조)에 따라 피상속인 사망으로 자동개시되고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 이전되어 농지의 상속과 취득 현황 파악이 어려우며, 상속인과 이농자 소유 농지의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 등에 대한 적절한 관리 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속인 및 이농자 소유농지도 농업경영에 이용되어야 하는 농지임을 명확히 하고, 취득 후 3년 이내에 직접 농업경영하지 않을 때는 처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상속농지나 휴경농지 현황을 행정기관과 이해관계인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및 연계 정보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지법」상 비농업인이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도 해당 농지가 농업경영에 이용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안 제6조제2항 단서 신설).

- 나. 상속으로, 8년 이상 경작 후 이농자가 농지를 취득하거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경우에는 처분 의무를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제1항제4호의2및 제4호의3신설).
- 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농지 관련 정책수립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전산자료, 부동산등기전산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대해 해당 자료를 관리하는 기관에 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에 따르도록 하는 근거 마련 및 농지 관련정보를 전자화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4조의2제1항 및 제3항 신설).
- 라. 상속농지, 휴경농지 등 특정 농지를 매입, 임대하려는 자 등 이해 관계인은 해당 농지의 소유자, 관리자, 임차인 등에 대한 정보를 행 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함(안 제54조의2제4항 신설).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제3항 중 "제23조제1항제2호부터"를 "제23조제1항제1호부터"로, "제1항에도"를 "제1항 또는 제2항에도"로 한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제10조제1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한 자가 3년 이 내에 농지를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 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4의3.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한 자가 3년 이 내에 농지를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 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의2(농지정보의 관리 및 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장・

군수·구청장 등은 농지 관련 정책 수립, 농지원부 작성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자료, 부동산등기전산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대해 해당 자료를 관리하는 기관에 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와 이 법에 따른 농지 관련 자료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업무에 필요한 각종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 영할 수 있다.
- ④ 인근 토지 소유자나 이용하려는 자 등 이해관계인이 휴경농지의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임차인, 사용인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1. 성명
- 2. 주소지 및 연락처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생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현행
략)	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	
다. <단서 신설>	<u>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u>
	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③ <u>제23조제1항제2호부터</u> 제6	③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u>제1항에도</u> 불구하고	<u>제1항 또는 제2항에도</u>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u>.</u>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
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 농	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
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	
내에 해당 농지(제6호의 경우	

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당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신 설>

<신 설>

5. ~ 8.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한 자가 3년 이내에 농지를 자연재해 ·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 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 청장이 인정한 경우

4의3.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한 자가 3년 이내에 농지를 자연재해 · 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5. ~ 8. (현행과 같음)

② (생략)

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와 이 법에 따른 농지 관련 자료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54조의2(농지자료 통합관리) 농 제54조의2(농지정보의 관리 및 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과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농지 관련 정책 수립, 농지원부 작성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주 민등록전산자료, 부동산등기전 산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료에 대해 해당 자료를 관리하는 기관에 그 자료를 요 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 이 없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 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된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와 이 법에 따른 농지 관련 자료 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 업무에 필요한 각종 정보의 효 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 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스 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④ 인근토지 소유자나 이용하 려는 자 등 이해관계인이 휴경

농지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 한다), 임차인, 사용인 등에 관 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 시 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호 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u>1. 성명</u>
- 2. 주소지 및 연락처